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13431 선지급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민현
변 론 종 결	2022. 3. 15.
판 결 선 고	2022. 4.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380,737원 및 그중 637,517,059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434,039원 및 위 금원 중 673,547,718원에 대하여 2022.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는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 12. 29. 위 회사를 흡수합병(이하 주식회사 D와 원고를 총칭하여 '원고'라 한다)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화 수입, 제작,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영상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 체결 및 부속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8. 4.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영상저작물 저작권을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계약서 제1조), 그 영상저작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다음 그 수익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작품의 목록 및 저작권의 범위, 계약기간, 선급금의 지급, 수익 분배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은 부속합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8. 4. 19. 피고 회사와 E 2편, 3편을 계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작품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E 2편의 경우 2018년 4분기 이내에, E 3편의 경우 2019년 2분기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부속합의(이하 '1차 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 1차 부속합의서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급금 3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 2, 3차 부속합의서에서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하고, 1, 2, 3차 부속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제4조 (선지급금(AD)지급) 1. 을은 갑의 제1조 계약작품의 판권 양수를 위해, 본 합의서 체결 후 선지급금으로 일금 삼억원(₩30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위 1항의 선지급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1차 선지급금 일금 일억 원(₩10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으로부터 계약작품의 판권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제반 증빙서류와 최종 시나리오와 캐스팅 계약서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2) 을은 2차 선지급금 일금 일억 원(₩10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이 제1조의 계약작품 중 E2의 크랭크업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3차 선지급금 일금 일억 원(₩10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이 제1조의 계약작품 중 E3의 크랭크업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2018. 11. 21. 피고 회사와 E 시즌2의 1, 2, 3편을 계약작품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2020년 1분기 이내에 위 계약작품들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부속합의(이하 '2차 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 2차 부속합의서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급금 5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 (선지급금(AD)지급)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1. 을은 갑의 제1조 계약작품의 판권 양수를 위해, 을이 2018년 4월 19일에 체결한 본 계약 이후 체결한 모든 합의서에 의거해 갑에게 기지급한 총 선지급금 일금 삼억원(₩300,000,000/부가세별도)에 추가하여 선지급금 일금 오억 원(₩50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위 1항의 선지급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1차 선지급금 일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으로부터 계약작품의 판권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제반 증빙서류와 최종 시나리오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2) 을은 2차 선지급금 일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이 제1조의 계약작품 중 E 시즌2 1편의 크랭크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3차 선지급금 일금 이억 원(₩20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이 제1조의 계약작품 중 E 시즌2 1편의 스크리너 제출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4) 원고는 2019. 3. 7. 피고 회사와 F, G, H, I를 계약작품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2020년 2분기 이내에 위 계약작품들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3차 부속합의(이하 '3차 부속합의'라한다)를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6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작품 중 F, I가 크랭크인되지 아니하여 위 작품들에 대한 3차 부속합의서 제4조 제2항 제2), 3)호의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인 선급금 39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9,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제4조 (선지급금(AD)지급)

1. 을은 갑의 제1조 계약작품의 판권 양수를 위해, 을이 2018년 4월 19일에 체결한 본 계약 이후 체결한 모든 합의서에 의거해 갑에게 기지급한 총 선지급금 일금 사억오천만 원(₩450,000,000/부가세별도)에 추가하여 선지급금 일금 육억 원(₩600,000,000/부가세별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위 1항의 선지급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1차 선지급금 일금 일억팔천만 원(₩18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으로부터 계약작품의 판권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제반 증빙서류 수령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2) 을은 2차 선지급금 일금 사천오백만 원(₩45,000,000/부가세별도)을 갑이 제1조의 계약작품 중 각 작품의 크랭크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3차 선지급금 일금 육천만 원(₩60,000,000/부가세별도)을 갑이 제1조의 계약작품 중 각 작품의 스크리너 제출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5) 한편, 이 사건 1, 2, 3차 부속합의서 중 선급금의 반환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공통된다.

제4조 (선지급금(AD)지급)

3. 갑의 사정으로 인해 제1조의 계약 작품 중 어느 일부라도 제공이 불가하거나 개봉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을의 반환 요청 즉시 을에게 선지급금 잔액을 반환한다.

4. 전 1항의 선지급금이 전3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계약작품 서비스 개시 완료 후 6개월까지 전액 공제 완료되지 않거나, 을이 전 1항의 선지급금이 전액 공제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즉시 선지급금 잔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선지급금 잔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작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5. 갑이 전 4항 내지 5항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지체 1일당 미반환 금액의 연 18%의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6)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및 1, 2, 3차 부속합의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1]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

1)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서 및 1, 2, 3차 부속합의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사내이사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부속합의서 제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선급금 반환청구

2차, 3차 부속합의서에서 각 정한 계약작품 서비스 개시 완료일 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선급금 전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속합의서 제4조 제4항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가 제2차 부속합의서의 계약작품인 E 시즌2 2편, 3편, 제3차 부속합의서의 계약작품인 F, I의 촬영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계약작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개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속합의서 제4조 제3항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구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권 673,547,718원(선급금 잔액 612,316,108원 + 부가세 61,23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부속합의서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2) 상계 주장

원고는 매월 이 사건 계약작품들의 수익에 관한 정산내역서 발송으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과 상계를 하여 왔다. 피고 회사의 정산금채권은 법정 변제충당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의 이자에 우선 충당 후 원금 충당이 이루어므로,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434,039원(선급금 673,547,718원 + 지연이자 81,886,321원) 및 그중 673,547,718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상계적상일인 2022.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나. 피고들

1) 부속합의서 제4조의 무효

이 사건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들은 원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보유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 무상으로 피고 회사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을 양수하고 원고가 단지 중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보다 더 높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으며, 계약작품의 흥행이 저조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영상물 저작권을 구입하여 배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제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약관법 제6조)이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법 제7조 제2호)이므로 무효이다.

2) 부속합의서 제4조 제3항 사유 미발생

피고 회사는 2차, 3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계약작품이 흥행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의견을 조율하여 2차, 3차 부속합의서 계약작품의 제작을 연기하였던 것 뿐이며,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작품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개봉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3) 반환될 선급금의 액수 불특정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선급금이 특정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가 해제되지 않고 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력이 존속하여 계속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급금 잔액이 계속 변동이 되고 실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월 선급금 잔액을 통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 잔액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부속합의서 제4조의 효력: 약관법 위반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는 원고가 동종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양식의 계약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법의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4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약관법 제6조 제1항)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피고 회사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법 제7조 제2호)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속합의서 제4조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를 위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작품인 저작물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작품을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갑(피고 회사)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을(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갑(피고 회사)과 을(원고)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작품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리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호는 "갑(피고 회사)은 본 계약을 통해 을(원고)에게 양도된 저작권을 제3자에게 이용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 자체를 양도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저작권 양도 등록을 요청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작품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양도 등록을 거친 사실이 없다.

④ 만일 이 사건 계약이 저작물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저작물을 재양도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계약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아니하다.

2) 이 사건 1, 2, 3차 부속합의서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계약작품의 판권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제반 증빙서류와 최종 시나리오와 캐스팅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때, 계약작품의 크랭크업 후, 계약작품을 스크리너에게 제출 후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 회사는 계약작품을 제작하고 완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도 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용하여 계약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금융이익 상당 이익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1차 부속합의 3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30,000,000원, 2차 부속합의 5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50,000,000원, 3차 부속합의 39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9,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4)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계약작품이 완성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급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계약작품의 완성 여부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고, 선급금을 지급한 액수보다 피고 회사의 수익이 저조할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5)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고, 원고는 IP·TV 등에 대한 공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 회사에게 분배하여 정산하여 주었고, 계약작품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의 한도를 정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작품들이 흥행될 경우 그로 인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속합의서 내용이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작품을 공급받고 위 작품들을 IP-TV, 케이블, 공중파 등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IP-TV 업체 등과 접촉하여 작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액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기 위해 교섭하고, 계약작품들의 수익금을 지급 받는 절차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가 과소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작품의 수익은 IP-TV, 케이블 VOD, 위성TV 유무선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및 DMB의 경우 PPV(Pay-Per-View) 정산 방식으로 원고가 55%, 피고 회사가 45%를 분배받고, IP·TV, 케이블 TV, 공중파, 숙박업소, DVD방의 경우 FLAT(단매) 정산 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식으로 원고가 20%, 피고 회사가 80%를 분배받기로 되어 있다. 즉 FLAT(단매)방식으로 정산 받는 부분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보다 훨씬 많은 80%의 수익을 분배받고 있으며, PPV(Pay-Per-View) 정산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는 절반에 가까운 45%를 분배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수익의 분배 비율이 피고 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4조 제4항에 의한 선급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제4조 제4항 선급금 반환 사유의 발생

원고가 2021.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제2차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계약작품의 서비스 개시일인 2020년 1분기, 3차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계약작품의 서비스 개시일인 2020년 2분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전액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제4조 제4항이 정한 "선급금이 계약작품 서비스 개시 완료 후 6개월까지 전액 공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급금 잔액의 특정

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반환청구권 또는 선급금의 공제가 가능한 작품의 공급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는 잔존하는 선급금 잔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에 선급금의 잔액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는 선급금 잔액에 대한 특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선급금 잔액이 변동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므로 선급금 잔액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액수는 특정된 것이고, 이 사건 선급금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수익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피고 회사가 선급금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선급금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된다고 할 수 없고 선급금 잔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정산되고 남은 선급금 612,316,108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1,231,610원을 합산한 673,547,7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부속합의서 제4조 제4항에 의한 약정금을 청구할 경우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선급금의 반환은 수익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역시 반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의 부속합의서 제4조 제4항에 의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속합의서 제4조 제3항에 의한 반환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상계 주장 관련

1)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선급금 612,316,108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1,231,610원을 합산한 673,547,718원의 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내지 8호증의 1~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5조 제3항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IP·TV 업체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달의 익월 말일 월별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정산 내역서를 피고 회사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정산내역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는 원고에 대한 수동채권으로 ① 2021. 3. 31. 3,705,558원, ② 2021. 4. 30. 3,848,314원, ③ 2021. 5. 31. 2,085,550원, ④ 2021. 6. 30. 5,448,778원, ⑤ 2021. 7. 31. 1,528,093원, ⑥ 2021. 8. 31. 1,594,892원, ⑦ 2021. 9. 30. 8,690,636원, ⑧ 2021. 10. 31. 2,197,095원, ⑨ 2021. 11. 30. 2,736,325원 ⑩ 2021. 12. 31. 1,592,443원, ⑪ 2022. 1. 31. 1,257,655원, ⑫ 2022. 2. 28. 1,345,320원의 각 정산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선급금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선급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2021. 3. 10. 먼저 도래한 이상 2021. 3. 31.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회사의 각 정산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매월 말일마다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선급금반환채권과 피고 회사의 ① 내지 ⑥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2021.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하였고 위 서면이 2021. 9. 13.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⑦, ⑧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2021.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하여 2021. 10. 26. 그 서면이 도달한 사실, ⑨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2021.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하여 같은 날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내지 ⑫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2022.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하여 2022. 3. 14.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정산금채권은 그 발생시점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2) 지정충당에 의한 상계 충당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원고의 선급금반환채권의 원금에 충당하는 내용으로 정산내역서를 보낸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원고의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각 정산금채권은 원고의 선급금반환채권 중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원고의 회계시스템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되어 발송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원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표시한 정산내역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정충당에 의한 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상계적상일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동채권 잔액	상계적상일까지 자동채권 잔액에 대한 발생이자
1	2021. 03. 31.	673,547,718	3,705,558	669,842,160	7,307,531
2	2021. 04. 30.	669,842,160	3,848,314	665,993,846	9,909,993
3	2021. 05. 31.	665,993,846	2,085,550	663,908,296	10,181,494
4	2021. 06. 30.	663,908,296	5,448,778	658,459,518	9,822,204
5	2021. 07. 31.	658,459,518	1,528,093	656,931,425	10,066,312
6	2021. 08. 31.	656,931,425	1,594,892	655,336,533	10,042,95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15

7	2021. 09. 30.	655,336,533	8,690,636	646,645,897	9,695,389
8	2021. 10. 31.	646,645,897	2,197,095	644,448,802	9,885,709
9	2021. 11. 30.	644,448,802	2,736,325	641,712,477	9,534,311
10	2021. 12. 31.	641,712,477	1,592,443	640,120,034	9,810,289
11	2022. 01. 31.	640,120,034	1,257,655	638,862,379	9,785,944
12	2022. 02. 28.	638,862,379	1,345,320	637,517,059	8,821,551
자동채권 잔액에 대한 발생이자 합계액					114,863,678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380,737원(선급금반환채권 잔액 637,517,059원 + 지연손해금 114,863,678원) 및 그중 637,517,059원에 대하여는 최종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송지현

판사 노해준